

충청북도교육청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지원 조례안

심사 보고서

의안 번호	728
----------	-----

2017. 11. 29.(수)
교 육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자: 정영수 의원 등 7인

나. 발의일자: 2017년 10월 31일

다. 회부일자: 2017년 11월 1일

라. 상정일자: 2017년 11월 24일

(제36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)

마. 주요내용

○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: 정영수 위원장)

가. 제안이유

○ 충북지역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과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확립하여 장애인평생교육을 활성화 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에 사용된 용어 정의(안 제2조)
-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지원(안 제4조)
-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지원 조건(안 제5조)
-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지원 사업에 대한 지도·감독(안 제6조)

3. 검토보고 요지

(수석전문위원: 최광주)

- 본 조례 제정안은 충북지역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과 지원 사업의 범위, 지도·감독의 권한 등을 규정하고,
-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확립하여 장애인평생 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론요지 : “생략”

6. 심사결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수의견요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 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교육청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지원 조례안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교육청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청의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“장애인” 이란 충청북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.
- “평생교육” 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, 성인 문자해득교육, 직업능력 향상 교육, 인문교양교육, 문화예술교육, 시민 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.
- “장애인 평생교육 시설” 이란 「평생교육법」 제20조의2, 제31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의 평생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평생교육 활동을 장려·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.

제3조(지원) 충청북도교육감은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- 문자해득교육사업
- 학력보완교육사업
-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제4조(지원조건)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이 제3조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
- 3년 이상 연속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 운영

2. 의무교육을 수료하지 못한 장애인 평생교육 학생 수 15명 이상

3. 그 밖에 충청북도교육감이 정하는 사항

제5조(지도·감독) 충청북도교육감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한 경우에
는 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라 교부조건
을 부여할 수 있고, 사업에 대한 지도·감독을 할 수 있다.

제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 계 법령

□ 평생교육법

제20조의2(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) ① 국가·지방자치단체 및 시·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·운영할 수 있다.

② 국가·지방자치단체 및 시·도교육감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31조(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) ①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·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·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. 다만, 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, 부당집행하였을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<개정 2015.3.27.>

③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는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19조제1항의 교원을 둘 수 있다. 이 경우 교원의 복무·국내연수와 재교육에 관하여는 국·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④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54조제4항에 따라 전공과를 설치·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·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로 전환·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.>

- ⑤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·절차, 입학자격, 교원자격 등과 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인가 기준·절차, 학사관리 등의 운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5.3.27.>
- ⑥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의 학교에 준하여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15.3.27.>
- ⑦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학생 처리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관할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- ⑧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재산관리, 회계 및 교원 등의 신규채용에 관한 사항은 각각 「사립학교법」 제28조, 제29조 및 제53조의2제9항을 준용하고, 장학지도 및 학생의 학교생활기록 관리는 각각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7조 및 제25조제1항을 준용한다. 다만,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·결산 및 회계 업무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. <신설 2015.3.27.>

□ 초·중등교육법

제2조(학교의 종류) 초·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.

1. 초등학교 · 공민학교
2. 중학교 · 고등공민학교
3. 고등학교 · 고등기술학교
4. 특수학교
5. 각종학교

□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

제4조(보조대상 사업) 교육감은 「지방재정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1.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
2.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
3. 교육감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,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5조(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) ① 교육감은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시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.

- ②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 할 수 없다.
- ③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예산의 편성은 교육부장관(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하지 않을 때에는 행정자치부 장관)이 정한 기준에 따른다.
- ④ 교육감은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충청북도교육청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충청북도교육청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

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-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

2. 비용 발생 요인

-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세부지원 기준과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해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지속적 운영 지원 필요

3. 관련조문

- 제3조(지원) 충청북도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은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문자해독교육사업

2. 학력보완교육사업

3.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- 제4조(지원조건)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 제3조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
1. 3년 이상 연속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을 한 경우

2. 의무교육을 수료하지 못한 장애인 평생교육 학생 수가 20명 이상인 경우

3.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

4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: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2기관 운영

나. 추계 결과

(단위: 천 원)

연간 운영비 추계		연도별 운영비 추계						
산출기초	계	2017년	2018년	2019년	2020년	2021년	합계	
1. 장애인평생교육시설		97,380	97,380	97,380	97,380	97,380	486,900	
가. 다사리학교 60,000,000원×1기관=	60,000	60,000	60,000	60,000	60,000	60,000	300,000	
나. 평생열린학교 37,380,000원×1기관=	37,380	37,380	37,380	37,380	37,380	37,380	186,900	

다. 재원조달방안: 보통교부금

5. 연도별 비용 추계표 : 불임

6. 작성자: 교육국 과학국제문화과장 김영미